

#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한자의 처벌문제와 대응책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94. 1. 5) 및  
시행(94. 7. 5)에 대비하여 –

신 각 철 (법제처 법제연구원)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컴퓨터프로그램 거래에 있어 유념할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한다.  
(이 글은 소속기관과 무관한 필자의 견해임을 밝힌다)  
– 편집자주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으로 선의 피해자 우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앤더스, 로터스 등 유명한 소프트웨어제작회사들의 연합체인 미국소프트웨어연맹(BSA)이 세계 곳곳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국에서 미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 행위를 감시하고 소송등의 법적제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BSA의 연락사무소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설치되어 현재 활동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1994. 1. 5 법률 제4,712 호)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되면 시행하게 되는바(1994. 7. 5 시행) 그중에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한 최종 사용자(end user)의 처

벌문제가 크게 우려된다.

지난번 BSA는 여의도에서 무역업을 하는 XX회사가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200대의 PC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이란 이유로 사직당국에 제소한 바 있다.

기업체 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 등에서 현재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PC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모두 프로그램이나 PC를 공급한 국내업체의 창작물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모두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로 부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자신있게 밝힐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그동안 통계조사등 보도에 의하면, 프로그램 20개중에 정품(불법복제가 아닌 것)은 불과 1개정도로 우리나라는 "불법복제의 천국"

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이름까지 붙여진 실정이다.(1992. 10. 20. 조선일보 인용)

이번에 개정된 프로그램법에 의하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를 보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처하도록 강화하였다.

특히 이번에 강화된 벌칙규정을 보면, 종전의 규정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중 하나만 적용했었다. 예컨대, 3년이하 징역을 살거나 또는 3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끝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간 징역도 살고 3,000만원 벌금도 물릴 수 있도록 즉 병과(併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 34조 제1항 참조). 흔히 쓰는 말로 "벌금물고 징역 간다"와 같이 벌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까지 살아야 하는 무거운 처벌제도를 도입하였다.

더욱이 불법복제행위를 직접 실행하고 판매하여 상당한 재산적 이득을 취한 죄값으로 벌금(3,000만원이하)물고 징역(3년이하)간다면 당연하다 하겠지만, 불법복제물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고, 설사 불법복제물이란 사실을 감지(感知)하였다 하여도 기업경영상 자금사정도 있어 싼 값에 샀다는 죄값으로 징역가고 벌금까지 문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고, 곧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PC를 구입할 경우 내장된 프로그램이 진짜(正品)인가 아닌가의 확인절차가 꼭 필요하다. 1~2대의 PC구입에서도 문제겠으나 앞의 사례에서와 같이 200대~500대 정도의 다량을 구입할 경우 특히 주의할 사항이다.

이 글에서는 프로그램거래에 있어 유념할 사항들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유념할 사항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거나 구입하거나, 용역의뢰하여 개발 또는 양도를 받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품(正品) 여부의 확인 점검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취득 사용할 경우 "불법복제물이란 사정을 알면서 취득 사용자"(이하 "악의사용자"(惡意使用者)라 함)로서 문제가 되었을 때 입증자료제시에 어려움이 있게된다.

### 프로그램 창작사실의 확인

프로그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는 창작후 1년 이내에 프로그램의 명칭, 창작자 성명, 창작년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등 창작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등록사실을 열람하거나 등록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 당해 프로그램에 대한 창작사실을 비록 형식적인 문서에 의한 확인이지만(실질적인 내용 확인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함) 일정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구입자(취득자)로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만원~20만원 정도의 범용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등록관청에 찾아가서 열람하거나 사본신청등을 한다는 것은

번거롭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의 직인이 착혀있는 프로그램등록증서(시행규칙 별지 7 호서식)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위와 같이 등록부등을 통한 창작사실의 확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등록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며, 미등록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저작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당시에 전문기관에 감리를 요청하거나 계약서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변호사등의 공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 등록제도의 활성화, 공신력 보완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사용허락을 받고자 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프로그램의 원저작자가 직접 창작자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즉 직거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자인 소프트웨어하우스는 생산만을 전담하고 판매업자(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저작프로그램은 거의 국내 판매업체(대리점)에서 취급하고, PC에 내장된 경우는 PC 제조업체 모든 PC 대리점에서 취급한다.

이 경우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등록부의 열람이나 등록증서의 확인등 절차로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미등록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저작프로그램(수입된 미등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외국인 저작프로그램이나 미등록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구입자(수요자)가 당해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있어(사용허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프로그램 등록증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면, 상품판매를 위해 누구나 즉 창작사실이 뚜렷하고 정당한 권리자라면 등록절차를 밟을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미등록 프로그램은 구입하지 않고 사용허락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와 같이 수요자 모두 등록제도에 대한 관심과 공신력(실질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도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을 인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프로그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4. 2. 1)

따라서 「등록제도」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검찰 경찰등 사직당국에서나 법원등의 판결에서도 일단 수요자가 등록증 사본을 첨부받아 계약했거나 등록부를 열람 확인한 사실만 입증된다면 「악의 최종 사용자」(惡意最終使用者: 불법복제물이란 사실을 알고 취득 사용하는 자)로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프로그램등록의 활성화 및 유통의 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번에 개정된 프로그램의 벌칙규정을 보면 「프로그램등록 또는 프로그램 복제물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프로그램을 자기의 창작처럼 허위로 등록했거나 외국인 저작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허위등록하거나 복제물을 제출하였을 경우 무서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현행의 등록제도도 상당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은 등록할 경우 등록기관에서 복제물을 관리하는자가 알게된 프로그램의 비밀(소스코드등)이 누출될까 우려되어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프로그램법에서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병과(併科) 할 수 있어, 벌금도 내야하고 징역도 살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법 제23조, 제34조 제2항) 이와같이 등록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종전의 경우 1년이 하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등록과정에서 비밀유지가 상당히 확보될 것으로 믿어진다.

## 프로그램 품질보증제도 도입 시급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등록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창작사실을 심사하여 등록한다는 것은 심사기술상 창작정보확보문제, 기간소요, 소스의 공개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일반원리에서와 같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등록은 권리

발생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법상 등록제도는 창작사실의 명확화(창작년월일추정)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침해자에 대한 과실추정등 등록에 따른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등록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등록기관에서 창작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곤란하더라도 이를 보완하여 창작활동, 창작절차 등 과정심사를 즉 창작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 규칙에 대한 개정안에서 창작사실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94. 2. 1) 하였다) 또한 전산관계 연구기관(한국전산원 등)이나 전문연구단체, 협회에서 감리(또는 감정) 또는 추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방안도 적극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번에 개정된 프로그램법의 규정에 따라 악의의 최종사용자로서 처벌받을 우려도 있어 프로그램이나 PC의 구입을 기피한다면 우리나라 정보화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 이전 안내

#### ● (사)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 이전일 : 94. 3. 31
- 변경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66 한림빌딩 5층
- 대표전화 : 562-7041~2      - 팩스번호 : 562-7040

#### ● 나우콤

- 이전일 : 94. 3. 28
- 변경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2-22
- 대표전화 : 590-3800      - 팩스번호 : 593-1996